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 다음은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제3자에의 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이 갑→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 ③ 부동산이 갑→을→병→정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정이 병, 을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어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채권자라도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문 2】 임금채권 등의 배당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②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채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동순위로 배당된다.
- ③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 ④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의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 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3】 부동산강제경매의 매각허부결정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어야 한다.
-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고, 위 착오에 의한 오기가 주변시세 등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다.
- ④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일반승계가 있고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신고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승계인이 아닌 원래의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⑤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새로 매각을 실시해서는 안되고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4】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이하 우선채권이라고 함)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1주 이내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④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한 그 중 일부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 ⑤ 집행비용은 항상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우선채권에 해당하지만, 이미 지출한 비용이 아닌 장차 경매종료시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매각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우선채권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문 5】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제도 중 기압류에만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 ②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 ③ 해방공탁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④ 특별사정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 ⑤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문 6】 다음은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 ②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본등기청구권만 집행의 대상으로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로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⑤ 보관인선임 및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문 7】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류의 경합 등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 여부는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 ⑤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문 8】 가압류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②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 ③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할 수 없더라도, 대체집행에 따른 비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는 가능하다.
- ④ 가압류신청의 심리가 변론절차로 이루어져도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 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는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문 9】 제3자 이익의 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이익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매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본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② 이익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 ③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 ⑤ 본안의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익이유의 존부와 집행의 적부에 한정되며, 제3자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문10】 목적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평가를 명할 필요가 없다.
- ②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되었다면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평가 당시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허가로 인하여 건물의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장래의 법정지상권도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 ④ 제3자의 소유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는 비록 그 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⑤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문11】 다음 중 집행문을 내어 줄 때 조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② 피고는 소외 갑이 사망한 때에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소외 갑이 사망하였는지 여부
- ③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때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
-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그 1개월 후에 가옥을 명도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⑤ 피고는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피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문12】 다음은 금전채권집행의 현금화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② 여러 개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가 어느 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제3채무자가 공탁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문13】 다음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
- ② 유치권자의 배당순위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다.
- ③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 ④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4】 다음은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 ④ 집행할 관력이 있는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거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 ⑤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문15】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도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 ②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보전명령을 발령하였다더라도 보전처분신청 취하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 ③ 가압류신청진술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④ 보전소송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경우 2회 쌍방불출석이면 보전처분신청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보전소송에서의 입증 방법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16】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 ③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후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 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17】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방식,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선례에 의함)

- ① 강제경매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② 당사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대표자를 표시하고, 단순한 법인의 명칭변경이나 상호변경이 있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고 단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 ③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경매신청인은 검사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다.
- ④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청구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⑤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문18】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관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 ②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원이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닌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과 부동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⑤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19】 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청권자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에 한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승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인도명령이 발하여진 후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더라도 이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졌다면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 ④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를 불문하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면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 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었다면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다.

【문20】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유체동산집행에는 최저매각가격제도가 없으나,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법정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도 있다.
- ④ 집행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집행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다.
- 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문21】 다음은 청구이익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더라도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 ④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22】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의 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② 매각기일통지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각기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가 된다.
-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불명일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④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누락의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치유된다.
- ⑤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문23】 가압류집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 ②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집행의 효력은 그 취하통지서가 제3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멸한다.
- ④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있으면 본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문24】 다음 중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 ①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의의 소
-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 ③ 소액사건집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 ④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

【문25】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및 촉탁서기제사항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외에 소유권보존등기도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촉탁서상 등기원인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그 연월일은 “개시결정일자”를 기재한다.
- ④ 촉탁서상 등기목적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기재한다.
- ⑤ 촉탁서상 과세표준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재하는데,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였다면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문26】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매각을 한 경우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② 매수신고가 있는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나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반복된다.
- ④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별도의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문27】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 ②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③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추심권의 포기에 따라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나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추심신고의무는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28】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② 대체집행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 ③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문29】 부동산경매절차의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경매의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일괄매각결정은 특별매각조건이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문30】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납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 ②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 ③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고, 본집행과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할 수도 있다.
- ④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 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31】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의 전부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이나 차액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 ⑤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문32】 다음은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③ 법인 등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 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문3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
- ②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③ 이의사유에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의 소송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포함된다.
- ④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문34】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 ②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채권신고의 최고는 법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문35】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재산명시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 상압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 상법 제416조의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 까지 같음)

- ① 이사회가 정한 납입기일의 전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기일의 변경이 없더라도 납입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서에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 ③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종전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실권주를 전부 배정하였다더라도 신청서에 실권주 처리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외에 종전 주주 전원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④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소위 실권예고부청약최고기일을 단축하였다면 기간 단축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5억 원에 불과한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금전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